

진흥회 개시판

전자수출 애로타개반 운영 안내

본회는 최근 수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자산업 수출업체들의 수출활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 전자산업 특유의 애로사항과 개별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전자수출 애로타개반”을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귀사의 수출활동관련 애로사항을 본회로 신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오니, 별첨 “수출애로 신고” 양식을 참조하시어 매월 10일과 25일까지 본회로 송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사의 신고 내용에 대한 결과는 조치 즉시 회신해 드리며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중간 경과를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 아 래 —

1. 명칭 : 전자수출 애로타개반

2. 구성

- 반장 : 본회 업무상무

- 반원 : 국제부장(총괄), 부품/가전/산전/정보산업/환경/혁명등록/통상 과장 등

3. 주요 활동

가. 전자산업 수출업체의 애로사항 해결기구로 수출지원 사업 적극추진

나. 수출애로신고·처리 결과 정부 보고 : 매월 2회(1일, 15일) 산업자원부 보고

* 문의처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국제부 통상과
TEL : 555-6178

중형TV·팩시밀리·화물차 등 40개 품목 수입선 다변화 품목 해제

6월 30일부터 화물자동차 팩시밀리 등 40개 일제상품의 수입이 자유화 된다. 지프형 자동차 카메라 시계 등 32개 품목은 연말에 VTR, 대형컬러TV, 승용차 등 16개 품목의 수입금지조치는 내년 6월말에 풀린다.

산업자원부는 88개 수입선다변화 품목의 해제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수입선다변화 조치를 WTO(세계무역기구) 협약에 따라 99년말까지 폐지키로 했으나 작년 IMF 협상과정에서 1년 앞당겨졌다.

산자부는 6월 30일부터 수입금지에서 풀리는 화물자동차, 모터사이클(50cc 이하), 중형 컬러TV(21~25인치), 팩시밀리 등의 경우 국산화율이 높거나 국제경쟁력이 상당수준 확보돼있어 시장개방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자부는 연말에 해제되는 캠코더 자동포장기계 손목시계 등 32 품목중 상당수는 기술수준 품질 디자인 등에서 전반적으로 일제에 뒤지고 있어 개방쇼크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6월말에 풀리는 무선전화기 대형(25인치 이상) 컬러TV 등 16개 품목의 경우엔 일본상품과의 경쟁에 더욱 취약한 실정이어서 일본상품의 한국 시장잠식이 빠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산업연구원이 수입선다변화 해제에 따른 시장충격을 분석한 결과 3,000cc 이상 초대형승용차의 경우 수입 첫해에 5.4%, 3년째는 9.6% 정도 시장을 내주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은 카메라, 전자시계, 캠코더 등 일부 품목은 국

수입선다변화 해제일정 및 주요품목

일정	주요품목
6월30일	인쇄용지, 양모직물, 도자기, 선박엔진, 포크리프트트럭, 오프셋인쇄기, 팩시밀리, 마이크로버스, 화물자동차, 모터사이클(50cc이하), 전기드릴, 양수기(펌프), 오르간, 컬러TV(21~25인치)등 40개 품목
12월31일	자동포장기계, 수치제어식밀링머신,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 플라스틱사출성형기, 캠코더, 스테이션웨건(1천~1천5백cc), 지프형자동차(1천5백~2천5백cc), 사진기(35밀리필름용 제외), 보통용지복사기, 아날로그식손목시계, 아세톤, 인조피혁 등 32개 품목
99년 6월30일	타이어, 엔진부품, 굴삭기, 수치제어식 수평선반, 머시닝센터, 전기밥솥, VTR, 무선전화기, 25인치 이상 컬러TV, 승용차(1천~3천cc), 승용차(3천cc 이상), 스테이션웨건(1천5백~3천cc), 자동차부품사진기(35밀리필름용)등 16개 품목

내산업 기반이 붕괴될 정도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했다.

캠코더의 경우 개방 첫해에 일제의 국내시장점유율이 50%에 이르고 중형(20~25인치) TV의 경우에는 30% 정도 시장을 내주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은 “대만의 경험에 비추어 일부 국내생산업체들은 일본의 유통업체로 전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98~'02 군용장비부품개발품목』안내

국방부에서 추진중인 '98~'02 군용장비부품개발품목 목록을 본회에서 입수, 열람중에 있습니다. 동사업(부품개발사업)에 관심이 있는 회원사나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사는 본회 개발지원과(TEL : 553-0941, 371, 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이용 안내

과학, 기술,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현대산업에서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분쟁시 재판에 의한 해결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개인 권리자 또는 영세업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 당하더라도 적절한 구제수단을 찾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특허청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분쟁의 효율적인 알선·조정을 위해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 산업재산권 분쟁 발생시 신속·간편·경제적인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기구명칭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2. 조정신청대상

- 산업재산권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
-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에 관련된 분쟁
- 직무발명보상에 관련된 분쟁
- 기타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3. 조정위원 구성

- 조정위원은 산업계, 학계, 판·검사, 변호사, 변리사, 특허청 공무원 등 20명으로 조직되어 있음

○ 조정위원 중에서 양 당사자가 지명한 3~5명의 위원으로 담당 조정부를 구성·운영

4. 조정제도 이용시 이점

- 조정위원들이 산업재산권 분야의 전문가들이므로 분쟁당사자들이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선에서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조정
- 조정이 성립되었을 경우 장기간(2~4년)이 걸릴 분쟁이 단기간(2~3개월) 내에 해결
- 신청절차가 간편하며 조정신청 비용이 무료이

므로 분쟁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 모든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므로 기업의 비밀이 공개될 염려가 없고 당사자의 권익이 보호됨
- 조정과정에서 쌍방이 소유한 특허기술의 Cross-License 계약, 기술협력계약 등 전략적 제휴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
- 분쟁당사자간에 약감정을 남기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을 보게 되므로 기업간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됨
- 5. 조정의 협력 :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서가 작성되면 『민법상 화해 계약』이 성립됨
- 6. 조정신청 방법 : 소정의 조정신청서 서식에 따라 특허청에 제출
(신청비용 : 무료)
- 7. 문의처 :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관리국 조사과)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3-1(우135-784)

전화번호 : (02)568-0121, 568-8151

(교환 : 273, 274)

FAX : (02)501-0900

【영업비밀】 보호제도 및 관리방안의 안내

■ 영업비밀의 정의

우리 기업의 기술수준이 과거보다 향상되었고, 국제교류가 증대함에 따라 핵심 생산기술이나 영업정보 등이 유출되어 기업에 경제적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

보'를 말한다.

■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특정의 기업정보가 법률상의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1)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정보이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항은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음
- 2) 비밀 보유자가 당해 정보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한다.
- 3) 그 비밀은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어야 한다.
-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는 보호되지 않음. 또한 특정의 정보가 유용성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 있어서도 경제적 가치를 지닐 것이 필요함.

■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표적 유형

○ 절취, 기망,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제3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이러한 영업비밀을 취득 또는 사용·공개하는 행위

○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제3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이러한 영업비밀을 취득 또는 사용·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 보호제도

위의 요건을 갖춘 정보를 침해당한 자는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1) 민사적 구제수단

○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

○ 손해배상청구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신용회복청구권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법원에 대해 청구할 수 있음.

2) 형사적 구제수단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특유한 생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제 3자에게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 정보의 합리적 관리방안

1) 비밀관리규정의 제정 · 시행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비밀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비밀표기, 보관용기 및 장소의 지정, 취급자의 인가, 관리대장의 작성, 접근의 제한 등에 대한 내용을 두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

2) 비밀유지계약 체결 등 인적관리 철저

재직시 또는 퇴직후 일정기간 동안 비밀로 분류된 정보에 대하여 누설을 금지하거나 경쟁기업에로의 전직금지, 경쟁적 창업행위의 금지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속적인 교육의 실시 및 비밀유지를 생활화하여 비밀이 쉽게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건물, 설비 등의 물적관리 철저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고 통신시설 등에
의한 비밀유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가 존재
하는 건물이나 시설에 대하여는 차단벽이나 방
호설비를하여 접근을 어렵게 하도록 하고 외부
로 통하는 통신설비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도
록하여야 함.

※ 기타 의문나는 사항이나 사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 특허청에 설치된 영업비밀보호
상담센타(02-568-0121, 조사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98 한국산업기술대전 (NEW TECH KOREA '98)
안내

산업기술대전은 산업자원부 주최, 산업기술정책 연구소 주관으로 92년부터 개최되어 6회째 개최되고 있는 행사로서,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이나 기술을 정부차원에서 한자리에 결집, 개최함으로써 개발제품의 홍보와 수요를 창출하고 기술개발에 기여한 기업인, 기술인에 대한 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98년 행사는 개발기술의 이전 및 상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테크노마트 성격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특히 신기술, 제품의 전시뿐만 아니라 생활 아이디어관 및 포스터 전시관 등을 신설하여 기술 개발 분위기의 대국민 확산을 도모코자 한다.

- 전시규모 : 250부스(5,184m²)
- 참가비 : 출품료 및 부스장치료 전액을 산업자원부가 지원함
- 산업기술혁신상 :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 18개 포상이 있음
- 참가자격 및 출품대상
 - 국내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된 신기술 및 신제품
 - 국내 대기업, 국·공립연구소, 대학 등에서 기술개발에 성공한 후 중소기업 등에 이전을 원하는 우수기술
 - 각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창업 육성되고 있는 보육업체 등의 보유기술
 - 산업자원부, 중기청, 특허청, 생기원 등의 국내 기술개발 지원 프로그램 및 산업기술에 관한 정밀경진대회 입상작 등
 - 생활아이디어 중 산업화로 연결 가능한 우수 아이디어로서 별도의 심사기준으로 선정된 작품
 - 국내에 기술 이전 및 공동연구를 희망하는 미국, 유럽, 이스라엘 등의 연구 기관 및 기업체 보유 우수기술
- ※ 문의처 : 산업기술정책연구소 기술협력부 기술지원실 (TEL : 829-8762, 8763, 8764, 8765, FAX : 829-8807)

중소기업 수출촉진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 사업안내

현 IMF체제의 조기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출촉진을 위한 각 경제주체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제산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확대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데 기여코자 합니다.

중소기업 수출촉진 컨설팅 지원사업은 종합무역상사 등에서 십수년간 해외 수출활동에 종사한 고급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컨설턴트를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수출 애로요인을 해결해줄 뿐만 아니라 해외 바이어 연결, 해외 시장정보 제공, 종합무역상사와 중소기업의 상품수출연계지원 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컨설팅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본 재단에 신청하면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중소기업의 이용을 바랍니다.

■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 해외시장 진출확대 및 신규시장 개척에 관심을 갖고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수출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지원 : 유력Buyer 등 해외인력 정보, 외국의 유통조직 및 딜러 정보, 업종별 수요 및 시장정보
- 종합무역상사와 중소기업의 상품수출연계 : 종합무역상사, 중견무역업체의 해외지사망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상품수출 연결
- 법적·제도적 절차에 대한 자문 : 현지투자, 합작생산 및 판매, 국제계약 체결, 구제금융, 외환 등

■ 지원기간

1개 기업에 3일간 전문가 파견지도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업체의 희망에 따라 연장가능(기간연장 시 비용은 수혜기업 전액 부담)

■ 비용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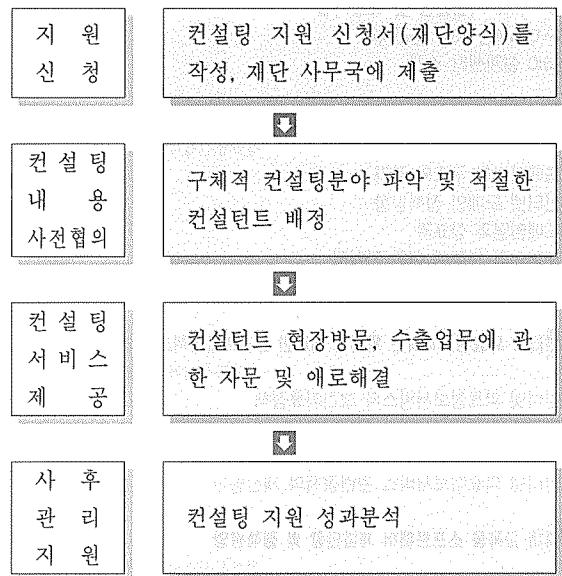
- 3일간의 자문비용은 국제산업협력재단에서 부담

- 수혜기업에서는 컨설턴트의 교통비 및 숙식비
만 부담

■ 컨설턴트단

종합무역상사 및 대기업에서 풍부한 해외업무 경험이 있는 고급인력을 1) 지역별(북미, 중국, 일본, 동남아, 중동, 중남미, 동구권, 유럽 등), 2) 업종별(섬유, 전자, 기계, 금속, 화학 등), 3) 전문분야별(시장정보, 현지투자 및 합작생산, 국제금융, 외환, 마케팅 등)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중소기업 요구에 따라 파견

■ 이용절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제산업협력재단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3771-0414, FAX : (02)3771-0143

벤처기업 기준 크게 완화

특허나 신기술을 이용해 생산한 제품의 수출액이 전년도 전체 매출액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개정, 7월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특허기술이나 신기술 이용제품의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과 같은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과 사업화 능력을 인정받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도 벤처기업으로 분류돼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산업자원부(4개)·정보통신부(4개)·과학기술부(3개)·환경부(1개)·문화관광부(1개) 등 의 신기술 사업으로 규정된 기준 벤처기업 요건을 확대, 산자부 장관이 인정하는 신기술사업에 공업발전법 제 15조 규정에 의한 「우수신기술인증사업(NT)」, 「기술혁신개발사업」,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 「프로그램저작권」 등도 벤처기업 요건에 추가됐다고 중기청은 말했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들이 대형빌딩내 일정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지정요건에 대해서는 현행 3층 이상의 건축물에 6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해야 하던 규정을 변경, 5층 이상 건축물의 일정구역에 10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한 곳도 포함시켰다.